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의 하위법령 개정방향 연구

Research of the revisions of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nd
quarantine act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Vol 1

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목 차

I.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한글	1
영문	2

II.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연구 개발 목표	1
1.1 목표	1
1.2 목표달성도	1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
제2장 최종 연구 개발 내용 및 방법	1
제1절 국제보건규칙(IHR)	1
1. 국제보건규칙 개요	1
2. 국제보건규칙(2005) 개정 경과	2
3. 국제보건규칙(2005)의 내용	3
제2절 국제보건규칙(2005)와 국내 전염병 관리 법령	8
제3절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11
1.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	11
2. 하위법령 주요 위임 내용	22
3.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24
제4절 검역법 하위법령	25
1. 검역법 주요 개정 내용	25
2. 하위법령 주요 위임 내용	26
3. 검역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27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29
제1절 전염병예방법	29
1.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주요 쟁점	29
가. 시행령 위임 사항	29
나. 시행규칙 위임 사항	38

다. 고시 위임 사항	45
제2절 검역법 하위법령	51
1.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검역법 하위법령 주요 쟁점	51
가. 시행령 위임 사항	51
나. 시행규칙 위임 사항	54
다. 기타	66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68
제5장 연구성과	73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75
제7장 참고 문헌	76
제8장 첨부서류	77
부록 1.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자료	78
부록 2.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자료	127
부록 3.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록	141
부록 4. 검역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자문회의록	148

<표 차례>

별표 1.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결정도구	49
별표 2. 세계보건기구 신고 사항	49

I .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과 제 명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의 하위법령 개정방향 연구		
중심단어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보건규칙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주관연구책임자	손 명 세
연구기간	200 . . - 200 . .		
<p>1. 필요성 및 목표</p> <p>개정 예정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의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 의도와 적절히 부합하는 한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p> <p>효과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해 향후 전염병예방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국내 현황 및 실태에 적합한 관련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도모</p> <p>2. 연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자료 수집을 통한 사안의 검토 ○ 면접조사 및 현장조사: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에 관련된 기관(질병관리본부, 검역소, 보건소 등)에서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 ○ 전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실무자 자문회의 : 자문회의를 통해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관정을 확인하였음 ○ 정책자문회의(패널토의) : 국제보건규칙(2005)와 개정 예정인 전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의 궁극적인 개정 목적인 전염병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 방안의 마련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하위법령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인 법적 제도를 고안해 내는 기능 담당하였음 ○ 최종보고회 : 최종 개정안 및 정책개편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최종보고회를 통한 합의 도출하였음 <p>3.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보건규칙(2005)의 후속조치로 개정 예정인 국내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분석하였음 ○ IHR에 따라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법률별로 다음과 같음 <p>가.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위임사항으로는 (1)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내용 신설 (2)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 (3) 고위험 병원체의 반입허가에 관한 사항 (4) 역학 조사의 시기 및 내용 (5)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음 ◆ 시행규칙 위임 사항으로는 (1) 제4군 감염병의 종류 (2)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 (3)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4) 감염병환자의 입원통지에 관한 서식 (5)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예방접종의 날 지정에 관련한 사항을 제시함 ◆ 고시 위임 사항으로는 (1)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의 종류 및 감시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원치료 감염병환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 <p>나. 검역법 하위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위임 사항으로는 (1)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부여하고 (2) 검역소별로 지정되던 오염지역을 일관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3)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운행수단별로 정리하였음 ◆ 시행규칙 위임 사항으로는 (1) 검역감염병의사환자의 기준 제시 (2)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제시 (3) 검역 전의 승선·탑승에 관한 내용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 (4) 건강상태질문서의 간소화 가능성 제시 (5)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 내용에 관한 사항 (7) 검역소독 대행업 신고를 위한 시설, 장비, 약제 및 인력 기준 신설(8)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정리 (9) 검역차량 및 검역선 운용 기준에 관한 내용 규정함 ◆ 기타 사항으로는 (1) 해항검역장소 외에 기타 검역장소 위치 규정 (2) 검역소독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 (3) 각종 서식을 정비함 			

Summary

Title of Project	Research of the revisions of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nd quarantine act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Key Words	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act, quarantine act, revision, IHR		
Institute	Yonsei University	Project Leader	Myoungsei Sohn
Project Period	2007 . . - 2008 . .		
<p>As Korea declared the acceptance of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referred as IHR hereinafter) and agreed to the final proposition of it, Korea became obliged to amend and adjust the Quarantine Act and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Act in Korea to meet these regulations for the following measures.</p> <p>Accordingly, in order to observe the obligations and duties of the IHR, Dr. Sohn Myoungsei of Yonsei University established and oversees ‘The Study on the Amendment of Quarantine Act and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Act’ in the Medical Law and Ethics Research Center ever since the end of 2005.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de progress progressed on the amendments to be passed as official government bills from 2006.</p> <p>As of 2008, the government is currently finalizing legislative process, and its proposals are being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se proposals with the amendments of Quarantine Act and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Act are expected to b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by February 2008.</p> <p>Currently, the most specific effectu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above mentioned proposals are being subjected to mandate to subordinate laws and ordinances which are part of the procedural law in the National Assembly. Thus, the Medical Law and Ethics Research Center of Yonsei University is in the process of researching on the subordinate laws and ordin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Quarantine Act and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Act by the analysis of all amendment proposals under the Quarantine Act,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Act and the contents of IHR(2005).</p>			

II.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연구 개발 목표

1.1 목표

- 우리나라가 국제보건규칙(2005)에 수용의사를 표명하고 최종안에 합의한 이상,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속히 동 규칙 이행에 필요한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 및 그 하위법령 등의 국내법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완성된 법률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이에 따라 개정 예정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의 전부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 의도와 적절히 부합하는 한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해 향후 전염병예방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국내 현황 및 실태에 적합한 관련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도모하고자 함

1.2 목표달성도

- 국제보건규칙(2005)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국외 관련법률 및 하위법령 분석
 - 개정된 국제보건규칙(2005)의 내용과 후속 조치로 개정된 미국 및 일본과 호주 등 국외 관련법률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의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반영하였음
-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에 대한 분석
 - 개정된 법률의 내용 및 개정의도의 파악하는 한편 위임 내용을 파악하여 개편 방향 마련에 필요한 정책 대안 제시하였음
-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함
 -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마련 및 검역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수차례의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제시
- 향후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 및 조직적·체계적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함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제보건규칙(2005) 발표에 따른 동향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2005) 발표 : 2005. 05

- 국제보건규칙(2005) 번역 및 배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주관-질병관리본부,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2005. 12.21~2006.6.20)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7.05.09
-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7.06.11.

1.3.1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개정 배경

- 현재 전염병예방법은 일제 시에 제정된 『전염병에 대한 총독부령 폐결핵예방에 관한 취체령』 등이 1954년 『전염병예방법』으로 법령을 변경하여 새로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18차례 개정되어 왔음
-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개정은 전체적인 법안의 체계에 있어서의 정합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삭제 조항과 유사조항 등이 다수 남아 있어 국제보건규칙(2005)가 개정되기 전부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음
- 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전의 전염병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전염병의 종류 및 그 분류의 재검토함으로써 전염성 질환 관리에서 감염성 질환 관리로의 포괄적인 감독 필요성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출현의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여 관련정보를 IHR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받고자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국제보건규칙(IHR)을 조기 적용할 것’을 결의(2006. 제59차 총회)하였음
-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의 예방과 확산속도 저지를 위한 여러 전략을 개발 중이며, 우리나라도 2006. 8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PI』를 개발하였음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됨
 - 대유행시 통제 및 관리 항목을 제시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위기 시의 각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규정
 - 국민, 기관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파괴와 경제 활동 중단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담보하도록 함 위해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원칙을 정립하고, 주요 의사소통 주체별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내용을 기술함
 -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환자의 발생과 인플루엔자 원인 바이러스 분리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플루엔자 유행 징후를 조기에 포착(감시)하도록 함

-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대유행시 폭증하는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 관리에서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유행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율적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대유행 시 환자관리지침, 감염관리지침, 사망자 처리 지침 등을 준비
 -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의 개발, 비축, 접종 및 투약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여 대유행시 인플루엔자 감염자와 사망자를 최소화 하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백신 접종 우선 대상군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백신을 배정, 제공, 접종할 수 있도록 함
 - 대유행 시 취할 수 있는 공중보건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지역사회 내 대유행의 전파를 차단 혹은 최소화 하도록 함
 - 공중보건종사자, 보건당국 및 관련 민간단체, 대유행의 예방과 통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대유행 인플루엔자와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회원국이 조류 및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을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의 개정과 적용 없이 자발성에 기대하기 어렵기에, 국제보건규칙(IHR, 2005)이 발효되는 2007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시기 내에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동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2008년 제61차 총회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실제 법령 시행은 '08년 7.1일부터)할 예정으로 추진 중 임

1.3.2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연구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건강증진사업지원단

1.3.2.1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① 전체적인 법률의 구조와 체계 개선

제1장 총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 보완
- 국민의 책무와 권리, 감염병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 협력요청 조항 신설
-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 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제5장 감염병 전파차단조치

- 감염대유행 관리 대책의 마련, 감염병대유행 관리대책, 조항 신설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대유행 대비 약품, 장비비축 조항 신설

② 법정 감염병의 군 분류 체계 개선

- 제1안

제1군 감염병	가. 두창 나.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폴리오 다. 신규아형으로 인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 라. 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제2군 감염병	가. 콜레라 나. 페렴성 페스트 다. 황열 라. 바이러스성출혈열 (에볼라, 라싸열, 마버그열) 마. 웨스트나일열 바. 국가 또는 지역에서 특히 우려대상이 되는 기타 질병(뎅기열, 리프트벨리열, 수막구균성감염증 등) 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3군 감염병	필요시 일반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입원하거나 또는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제2안

제1군 감염병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 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사. 두창 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자.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신규아형으로 인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
제2군 감염병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 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
제3군 감염병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쯤쯤가무시증 타. 렘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제4군 감염병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재출현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
지정 감염병	제1군 내지 제4군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③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 수립

○ 정보 및 공중보건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법률안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개념을 법률에 반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감염병 관리정책 위원회 설치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통보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대유행대비 약품, 장비비축

1.3.2.2 검역법 개정(안)

① 현행 검역법 체계의 문제점 지적

○ 지금의 검역법은 제헌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해공항검역규칙(남조선과도 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이 폐지되고 1954년 해외로부터 전염병이 전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해공항에 내항하는 승객·승무원·선박·항공기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해공항검역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963년 이 법의 명칭을 검역법으로 바꾸어 개정한 후, 약 12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짐.

- 현재의 검역법은 일본의 검역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초기 제정 당시부터 항만 및 선박검역을 위주로 제정되었고, 이후 항공기, 도보검역 등이 추가되어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 조항에 선박, 항공기, 여행자, 도보검역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검역기준의 혼동을 야기시킴.
- 현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 하에 국립검역소를 두고 있으므로 검역법 상 이루어지는 업무가 질병관리본부장의 소관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검역소장의 권한 및 한계의 범위가 미흡함.
- 다른 법과는 달리 제2조는 “검역전염병의 정의”라고 규정되어 검역전염병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미비함.
 - 검역, 검역장소, 검역구역, 오염지역 또는 감염지역(위험지역), 매개동물, 검역대상운송수단 등
- 의심, 감염환자의 격리 및 이송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② 검역법의 개정방향 제시

- 기본적으로 검역의 관리 당국이 질병관리본부이며, 이에 대한 행정관리에 대한 구도가 나타나야 하며, 이와 함께 검역소장의 업무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임.
- 각 검역소에게 재량으로 맡겨져 왔던 업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지역(감염지역)의 지정 등의 검역 업무
- 다양해진 운송수단에 맞추어 각각의 검역조사 및 조치를 규정하여야 함.
 - 선박, 항공기, 육로, 여행자 등
- 검역조치 이외의 공중보건조치에 있어 검역소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구분하고,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감시 및 대응체계와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의심, 감염환자의 격리 및 이송 절차에 있어 검역소의 역량을 파악하여 담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기타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서식을 실제 통용될 수 있는 서식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③ 검역법의 개정안의 주요 검토 사항

- 법률 전체의 구조와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음.
 - 검역법에는 총칙이 단지 목적 및 정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책무, 권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도록 함.
 - 검역조치에 관하여는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와 사람에 대한 조치를 나누어 규정하도록 하여, 검역업무가 법률에 좀더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무엇보다도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지점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법률에 잘 표현될 뿐 아니라, 검역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④ 검역대상 전염병의 범위

- 최근 신종 전염병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역전염병에 포함시켜 검역조치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⑤ 권한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지점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법률에 잘 표현될 뿐 아니라, 검역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기본적으로 검역의 관리 당국이 질병관리본부임을 확실히 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리에 대한 구도가 나타나야 하며, 이와 함께 검역소장의 업무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명시
- 각 검역소에게 재량으로 맡겨져 왔던 업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오염지역(감염지역)의 지정 등의 검역 업무
- 검역조치 이외의 공중보건조치에 있어 검역소에서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구분하고,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의 감시 및 대응체계와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⑥ 검역 서식

- 서식을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예시하고 있는 서식의 명칭 및 형식대로 국내 서식도 개정하여야 하며, 실제 통용될 수 있는 서식으로 바뀌어 져야 함
 -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법 증명서
 - 해항보건상태신고서
 - 항공기종합신고서 보건부문

- 선박위생증명서

⑦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항만의 경우 여행목적으로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검역이 필요함.
 - 현재 여행목적의 여행자에게 검역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지역에서 여행한 후 비오염지역에서 운송수단을 타고 오는 여행자의 경우 전염병 등의 유입 가능성이 잔재함.
 - 따라서 운송수단 뿐 아니라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역관련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 정기선박의 경우 무전검역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
 - 정기선박이라 함은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을 항구에 정박하며, 수시로 국내외를 입출항하는 선박
 -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검역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기선박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검역구역에 관련된 부분
 - 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국 테러 이후 높아졌으나 국내의 경우 검역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낮은 상태임.
 - 특히 항만에서는 검역구역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태임.
 - 가장 이상적인 구역의 분할은 검역(Quarantine)→입국심사(Immigration)→세관검사(Customs) 순으로 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출입국에 관련하여서도 전염병의 전파 또는 생물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 등의 목적으로 검역이 생략되지 못하도록 검역업무를 우선하는 규정을 마련

⑧ 기타

- 소독조치
 - 소독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실정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역 측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소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예방접종
 -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에 있어 예방접종지정기관의료원 혹은 각 시도의 국·공립 병원 등에서 콜레라, 황열, 예방접종 후 검역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중불편의 해소 방안을 고려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검역소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격리 및 치료시설

- 전염병 유행 시 혹은 전염병 환자 치료 시, 각 병원 시설의 음압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수가의 차등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전염성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간 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함.

제2장 최종 연구 개발 내용 및 방법

제1절 국제보건규칙(IHR)

1. 국제보건규칙 개요

- 국제보건규칙의 제정 목적 :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에 상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교통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로 피하면서 국제적인 질병확산을 예방·방어·관리·대응¹⁾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 국제보건규칙의 주요 기능 : 각 회원국의 전염병 관리 및 특히 검역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를 규정하는 기능을 담당
- 개정 이전의 국제보건규칙(IHR)의 주요 내용
 - 1969년 채택 이후 2005년 개정 이전까지 1973년과 1981년에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의 중증 전염병의 유행상황을 감시하고 국가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함
 - (1) 보고 의무
각 회원국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사실을 WHO에 보고하고 WHO는 이를 역학주보(Weekly Epidemiological Record)에 발표함
 - (2) 구서, 살균, 살충, 소독 의무
대상 전염병의 국가간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은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구서(deratting),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함
 - (3) 보건문서
검역증,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제간 통용을 위한 보건문서 규정
- 개정 이전 국제보건규칙의 한계 : 1980년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신종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현행 국제보건규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²⁾
 - 1990년대 초반 남미에서 제7차 콜레라 범 유행이 시작
 - 1995년 아프리카 지역의 신종 전염병 '에볼라 출혈열(Ebola Haemorrhagic Fever)' 대유행

2. 국제보건규칙(2005) 개정 경과

1) 국제보건규칙(2005) 제2조

2) Obijiofor Aginam, International Law and Communicable Disease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80:946-951.

- 국제보건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1995년 제4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의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국제보건안전사업(Global Health Security)에 대한 결의 수용
 - 2001년 제54차 세계보건총회
 - 회원국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공중보건학적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을 WHO가 도울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 분야에 있어, 주권국의 의사결정과 권한에 다른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베스트팔렌 조약 (Westphalen Convention)체제’ 에서 전지구적인 관리(global governance)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함

- 2001년 결의안 국제보건규칙 반영 재결의
 - 2002년 세계보건총회
 - 2001년의 결의안을 국제보건규칙에 반영하기로 재결의

- 국제보건규칙 개정을 위한 작업
 - 2003년 제56차 세계보건총회
 - 2005년 제58차 세계보건총회까지 새로운 국제보건규칙을 마련하기로 합의
 - 모든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정부간 협상팀(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결의안 채택

- 제113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 2004년 1월
 - 사무국이 마련한 개정안 초안 보고받음
 - 2004년 11월 “정부간 협상팀” 제1차 회의 개최 결정 : 2004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세계보건기구 6개 지역별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검토하기 위함

- “정부간 협상팀” 제1차 회의
 - 2004년 11월 개최 :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정부간 협상팀” 제2차 회의
 - 2005년 2월 개최
 - 개정안에 기재될 보건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
 -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쟁점들이 해소되지 못함

- 최종안 합의
 - 2005년 5월 제2차 회의 속개 형식으로 “정부간 협상팀” 를 다시 개최
 - 최종안을 합의 후, 이를 “국제보건규칙(2005)” 라 명명

○ 2005년 5월 23일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

3. 국제보건규칙(2005)의 내용

가. 개괄

○ 체계

- 전반부에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후, 일상적인 검역에 해당하는 출입국시 각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 적용대상질병(검역전염병)의 확대

- 적용대상 질병을 ‘원인이나 출처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로 정의
-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라는 규정을 마련
- 이전 규칙에서는 ‘적용대상 질병(검역전염병)은 엘토르 콜레라를 포함한 콜레라, 페스트, 황열을 의미한다’라고 제한적으로 표현하였음
- 기존의 검역대상전염병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종 전염병 및 재발되는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등 다양한 질병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국제보건규칙의 목적(제2조)

- ‘국제적인 질병확산을 예방·방어·관리·대응하는 것’으로 규정
- 그 방법은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에 상응하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교통에 대한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국제보건규칙의 원칙(제3조)

- 인간의 존엄·권리·근본적인 자유의 전적인 존중
- 국제연합헌장과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준수
- 질병의 국가간 전파에서 세계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적용
- 자국의 보건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시행에 관한 각 국가의 주권 존중

○ 개정 국제보건규칙의 특징(제4조)

- IHR 국가 대표기관(National IHR Focal Point)과 책임당국(responsible authorities) 설치 강제
- IHR 국가대표기관 :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보건기구의 IHR 연락사무소에 각종 신고를 하는 역할과 국가의 다른 행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
- IHR 연락사무소(WHO IHR Contact Point) : IHR 국가대표기관의 상대 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설치함

나. 국제보건규칙의 공중보건 대응

(1) 전염병의 감시 및 신고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질병

(가) 의무 신고 사항

- 두창(small pox), 야생 폴리오바이러스에 의한 폴리오, 신규 아형으로 인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4종 전염병이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나) 임의 신고 사항

- 콜레라,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라싸, 마버그), 웨스트나일열 및 국가 또는 지역에서 특히 우려 대상이 되는 기타 전염병(뎅기열, 리프트벨리열, 수막구균감염증 등)과 원인 또는 출처 미상의 사건을 포함한, 잠재적으로 국제공중보건상 우려사항이 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결정 도구(국제보건규칙 별표2에서 제시)에 따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신고
 - ① 사건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고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것일 때
 - ② 국제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상당할 때
 - ③ 국제여행이나 교역을 제한할 위험이 상당할 때

(다) 그 밖의 신고 사항 및 시기

-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성립할 수 있는 모든 사건 : 평가 후 24시간 내
- 동 사건에 대응하여 시행한 보건조치의 내용
-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입수한 공중보건 정보 - 환례 정의, 검사 결과, 위험의 출처와 유형,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질병확산에 영향을 미친 조건 및 시행된 보건조치 등 : 지속적으로 제공
- 자국 영토 내에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하였거나 특이한 공중보건상의 사건이 발생한 증거
- 자국 영토 밖에서 발견된 공중보건위험이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 - 인체감염 사례, 감염이나 오염을 전파하는 매개체 또는 오염된 상품이 유·출입되는 경우 등 : 24시간 내
- 신고한 사건에 대한 WHO의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일차적인 답변이나 수신확인 : 24시간 내

(2) 세계보건기구의 대응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권한

- 각 국가의 신고를 받거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 (제9조)
-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발생시 임시 권고안 발동 및 종료 권한
- 일상적 또는 주기적으로 적용하는 지속 권고안 발동 권한

○ 세계보건기구가 발동할 수 있는 조치

- | |
|--|
| <p>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특정 보건조치에 대한 권고는 없음.② 감염지역에서의 여행력(travel history) 심사③ 의학적 검사와 실험실 분석의 증거 심사④ 의학적 검사 요구⑤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법의 증거 심사⑥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조치 요구⑦ 의심환자 대상 공중보건관찰(public health observation)⑧ 의심환자에 대한 검역(quarantine) 및 기타 보건조치 실시⑨ 필요한 경우 감염자 격리·치료 실시⑩ 의심환자나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검사 실시⑪ 의심환자나 감염자의 입국 거부⑫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의 입국 거부⑬ 감염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한 출국심사 및 제한 실시 <p>2)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소포우편물과 관련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특정 보건조치에 대한 권고는 없음.② 적하목록과 운송경로 심사③ 조사 실시④ 감염 또는 오염 제거를 위하여 출국·환승시 취하는 조치에 대한 증거 심사⑤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 또는 오염제거 조치의 실시⑥ 격리 또는 검역 실시⑦ 달리 이용 가능한 성공적인 절차가 없는 경우에 통제된 상황 아래에서 행하는 오염되거나 의심되는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의 압류 또는 파괴⑧ 출입국 거부 |
|--|

(3) 회원국의 역량 개발

○ 핵심 역량 제시

- 핵심역량
 - ① 회원국이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요소
 - ②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의 발병 양상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망의 기본 요소
- 검역 등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 및 세계보건기구와의 지속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정보교환 강조
- 각 회원국이 감시와 대응, 검역 등의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

- 입국지점의 핵심 역량 개발
- 입국지점의 책임 당국 지정 및 명단 통보 의무
- 입국지점의 매개체와 병원소를 포함한 감염 또는 오염원 관련 자료를 세계보건지구에 제공 의무

○ 입국지점 책임 당국(검역소)의 역할(제22조)

- ① 수하물 등에 대한 감염원·오염원 감시(monitoring)
- ② 입국지점 여행자 이용시설의 위생상태 유지
- ③ 구서, 살균, 살충 소독 및 사람에 대한 위생조치 감독
- ④ 운송수단 운영자에 대한 관리조치 의향 전달
- ⑤ 운송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제거 및 안전한 처리에 대한 감독
- ⑥ 국제 수로의 물을 오염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방출 감시 및 관리
- ⑦ 여행자, 수하물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 ⑧ 예상치 못한 공중보건사건에 대비한 효과적인 비상 방안 보유
- ⑨ IHR 국가대표기관과의 연락 유지

다.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보호

- ① 여행자에 대한 처우는 예의와 존중
- ② 성별·사회·문화·민족·종교의 고려
- ③ 충분한 식량과 물·적절한 숙소 제공
- ④ 의복·수하물을 비롯한 소지물의 보호
- ⑤ 적절한 의학적 조치
- ⑥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라. 기 타

- 추가적인 보건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
 - 국제보건규칙(2005)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제외
 - 각 국가에서 WHO의 권고안과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 각 국가와 WHO의 상호 협조의 의무
- 개인자료의 비밀 유지 의무

제2절 국제보건규칙(2005)와 국내 전염병 관리 법령

○ 국제보건규칙(2005)와 국내 전염병관리 법령 비교

국제보건규칙(IHR)	현행 검역법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1부 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원칙 책임당국 제1조 (정의) 제2조 (목적과 범위) 제3조 (원칙) 제4조 (책임당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검역전염병의 정의) 제38조의2 (질병관리조직의 설치·운영) 제38조의3 (권한의 위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장 질병관리본부 [신설] 국가공중보건비상사태 관리계획의 수립
제3부 권고안 제15조 (임시권고안) 제16조 (지속권고안) 제17조 (권고안 기준) 제18조 (사람,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소포우편물 관련 권고안)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5조의3 (국립검역소) 제36조 (도보검역) - 서식1 외항선통보서 - 서식2 항공기도착통보서 - 서식2의2 열차자동차검역통보 [신고]서	
제4부 입국지점 제19조 (일반적 의무사항) 제20조 (공항과 항만) 제21조 (육상교차점) 제22조 (책임당국의 역할)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5조의3 (국립검역소) 제36조 (도보검역) - 서식1 외항선통보서 - 서식2 항공기도착통보서 - 서식2의2 열차자동차검역통보 [신고]서	
제5부 공중보건조치	제2장 검역조사	

<p>제1장 일반 조항</p> <p>제23조 (출발과 도착 시 보건조치)</p> <p>제2장 운송수단과 운송수단 운영자에 관한 특별조항</p> <p>제24조 (운송수단 운영자)</p> <p>제25조 (경유 선박과 항공기)</p> <p>제26조 (경유 민간 화물차, 열차, 대형버스)</p> <p>제27조 (감염된 운송수단)</p> <p>제28조 (입국지점에서의 선박 또는 항공기)</p> <p>제29조 (입국지점의 민간화물차, 열차, 대형버스)</p>	<p>제4조 (검역을 요하는 운송수단)</p> <p>제5조 (군용운송수단)</p> <p>제6조 (검역통보)</p> <p>제7조 (검역장소) - 별표1 검역항별 검역장소</p> <p>제8조 (검역시각)</p> <p>제9조 (검역조사)</p> <p>제10조 (검역전의 승선 또는 탑승)</p> <p>제11조 (검역조치)</p> <p>제12조 (회항지시)</p> <p>제15조 (조건부검역해제)</p> <p>제16조 (수용장소내의 물건반출입금지)</p> <p>제17조 (감시의 해제)</p> <p>제18조 (요소독물건의 보관)</p> <p>제24조 (물품수입의 제한)</p> <p>제27조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p> <p>제29조 (검역구역안의 보건위생관리)</p> <p>제25조 (검역전염병 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p> <p>제37조 (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p> <p>제38조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p>	
<p>제3장 여행자에 관한 특별조항</p> <p>제30조 (공중보건관찰대상 여행자)</p> <p>제31조 (여행자 입국 관련 보건조치)</p> <p>제32조 (여행자에 대한 처우)</p> <p>제4장 상품,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적재지역에 관한 특별조항</p> <p>제33조 (통과 상품)</p> <p>제34조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적재지역)</p>	<p>제13조 (격리 또는 감시)</p> <p>제28조 (외국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조치)</p>	<p>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p>
<p>제6부 보건문서</p> <p>제35조 (일반조항)</p> <p>제36조 (예방접종이나 기타 예방</p>	<p>서식25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p>	

<p>조치 증명서)</p> <p>제37조 (보건상태신고서)</p> <p>제38조 (항공기종합신고서 중 보건부분)</p> <p>제39조 (선박위생증명서)</p>	<p>서식3 보건상태신고서</p> <p>서식4 항공기종합신고서</p> <p>서식4의2 열차·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p> <p>서식7 위생검사표</p> <p>[신설]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선박위생관리증명서</p> <p>제19조 (검역증의 교부)</p> <p>제20조 (가검역증)</p> <p>제21조 (회항명령)</p> <p>제22조 (무전검역)</p>	
<p>제7부 비용 부담</p> <p>제40조 (여행자에 관한 보건조치 비용부담)</p> <p>제41조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상품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비용 부담)</p>	<p>제14조 (비용부담)</p> <p>제33조 (수수료의 징수)</p> <p>제34조 (동전)</p> <p>제35조 (동전)</p>	
<p>제8부 일반 규칙</p> <p>제42조 (보건조치의 시행)</p> <p>제43조 (추가 보건조치)</p> <p>제44조 (협력과 지원)</p> <p>제45조 (개인정보의 취급)</p> <p>제46조 (생물학적 물질, 시약, 진단용 물질 수송 및 처리)</p> <p>제9부 전문가 명부, 비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p> <p>제10부 종결 조항</p>	<p>[신설] 개인정보의 보호</p>	<p>제54조의6 (비밀누설금지)</p>

제3절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1.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명 및 체계 정비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정확하고 과학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법률 적용의 범위와 조치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법률 명칭 변경
-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용어변경
 - 감염(Infection)의 국제보건규칙 상 정의는 “인간 및 동물 신체에 감염물질의 유입 및 발육 또는 증식을 의미하며 공중보건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
 - 전염(Communicable)의 의미는 감염보다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람 간 또는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으로 한정되어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감염병 중에서 누락될 수 있는 질환이 있음
 - 따라서 관리 대상 질병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 변경
- 질병관리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나. 관리대상 감염병 확대

-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신설(제2조 제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국제보건규칙에서 WHO에 통보할 사건의 범위 확대에 따른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신설
- WHO에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국내 감시를 위한 신고의무 부과

- 의료관련감염증 신설(제2조 1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의료관련감염증”이란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의료관련 감염증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국민 건강 위협 및 의료비 증가 등 중요한 사회경제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병원감염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감시할만한 국가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계기 마련

다. 국제보건규칙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관련

○ 감염병관리지원사업기구의 설치 운영(제9조)

제9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강화된 WHO 등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제10조)

제10조(감염병관리위원회)

- 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 시 전문가 자문 및 관련 부처 간 조율을 위한 위원회 신설

○ 기본계획 및 위기관리대책 등 주요정책 심의

제10조(감염병관리위원회)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또는

장기구매와 생산에 관한 사항

8. 제67조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수립 시행(제30조)

제30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체계
3. 대량의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4. 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한 조치 등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개념 반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기본 시책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함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대유행 대비 약품, 장비비축(제36조)

제36조(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장비의 비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 공중보건비상대응 계획을 수립·시행·유지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사시의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의 품목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약제나 보호구 등을 사전에 비축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 시나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예방 및 치료의약품의 투여로 인한 효과 및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비한 예방 목적의 항바이러스제 비축, 탄저 등 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비축, 두창 등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비축 등의 근거 마련
- 필요시 국내 강제생산에 대한 근거 조문으로 활용 가능

라. 감시 및 신고

○ 감염병 신고 체계 정비

- 모든 법정 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 제외)과 그로 인한 사망자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발생 시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여 신속한 감염병 관리 및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의사,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소에 신고(제12조)
- 국방부소속 의사, 한의사는 복지부장관 신고

제12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환자 또는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② 국방부 소속 병원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기타신고의무자에 일반인 포함(제13조)

제13조(기타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염병환자등으로 의심되는 자가 있거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요구하거나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여관,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표본감시대상감염병은 일반적 신고의무 면제

마. 감염병예방조치 및 WHO 권고안 관련

○ 감염병 예방 조치 범위 및 시행 주체 확대(제45조)

제45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이나 시체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 있는 음식물의 판매·접수를 금지하거나 그 폐기,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운송 수단, 사업장,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하수·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나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0.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시키는 것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동안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국제보건규칙의 권고에 따른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염병 예방 및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필요시 부검을 하도록 근거 마련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예방시설 설치(제32조 및33조)

제3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의료기관이나 사립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들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에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감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제3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감염병관리시설만으로 감염병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들의 진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립·사립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 유사시 감염병관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마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근거 마련

○ 감염병에 관한 강제조치 범위 확대(제38조)

제38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들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지면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군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만 행해졌던 강제처분을 확대하여 일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확대

○ 의료인, 의료인 단체, 국민의 권리와 협조의무강화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예방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인 개인은 물론 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의료인 단체의 협조 의무 신설
- 감염병 관리 시 개인의 부주의나 불이행은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협조도록 함

바. 감염병 환자 보호 증대

○ 격리개념에서 입원치료의 개념으로 전환

○ 감염병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호자에게 입원사실 통보(제39조)

제39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치료가 필요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입원명령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함

○ 감염병 입원치료대상 범위 확대(제37조)

제37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 외의 자 및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든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과거 격리 개념을 탈피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제 진료에 응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전파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성병건강진단 조항 보완(제18조)

제18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병에 감염되어 그 감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특정직업종사자 대상 검진 삭제

사. 고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 고위험병원체의 국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및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반영하여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할 때 신고토록하고, 반입시 허가를 받도록 근거 규정 신설

○ 고위험병원체 반입시 허가, 인수 이동시 신고

제20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 ① 감염병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이동계획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협약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관련 국내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위험병원체를 국외 반입 시 허가 제도를 신설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사항 고시 및 이행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관한 준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고위험병원체를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준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의무사항 명시

아. 벌칙 조항 신설

○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 200만원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 예방접종이상반응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6조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

- 역학조사의 실시는 집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전파 차단 및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 규정

○ 성병검진 불이행 200만원 → 50만원조정

제75조(벌칙)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병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경비지원 확대

○ 감염병입원치료비지원확대(제60조, 제62조)

제60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부담한다.

4.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진찰, 이송, 입원·치료 등에 든 경비

제62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제8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관한 경비

○ 감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제59조, 제60조, 62조)

제59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특별자치도나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비

5. 제3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감염병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같은 조에 따른 공립·사립 의료기관의 사용에 관한 경비

제60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부담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비

3. 제3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감염병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같은 조에 따른 공립·사립 의료기관의 사용에 관한 경비

제62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5.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비

○ 생물테러 등 감염병 대유행 약품 비축 또는 장기계약에 드는 경비

제36조(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장비의 비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위법령 주요 위임 내용

○ 세계보건기구신고대상감염병의 범위

7.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및 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감염병표본감시체계 정립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질병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 학교, 그 밖의 시설이나 단체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관리기관의 입원치료 받아야 감염병 분류

제37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5조(감염병관리시설의 설비·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의 설비와 관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예방조치 범위 등

제45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이나 시체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 있는 음식물의 판매·접수를 금지하거나 그 폐기,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운송 수단, 사업장,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하수·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쥐·벌레나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0.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시키는 것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동안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 2005. 05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2005) 발표 이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국제보건규칙(2005) 번역 및 배포
- 2005.12.21부터 2006.6.20까지 질병관리본부 주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로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연구 추진
- 2007.05.09 보건복지부에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예정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2007년 10월 26일 연구 착수
-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여 현재 6회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음

- 자문회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제4절 검역법 하위법령

1. 검역법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 체계 정비

- '목적', '용어정의'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안 제1조 및 제2조),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제6조 및 제7조)
- 각 조문의 성격 및 내용에 포함토라고 장(章) 분류체계를 개선함

나. IHR 개정안에 제시된 각종 공중보건조치의 시행 근거 마련

- 검역감염병을 기존의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추가하여 5종으로 검역감염병을 확대함(안 제2조)
- 기타 해외유입전염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전염병’을 규정하여 해외발생정보 수집 및 홍보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조)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중보건조치’, ‘검역감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한 감시’, ‘입·출국의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
- “쥐 또는 벌레”를 “감염병매개체”로 “쥐잡이소독증명서”를 “선박위생증명서”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의 명칭 변경(안 제33조 및 제36조)

다. 기타 각종 검역제도의 보완

- ‘조건부 검역해제’, ‘물품수입 제한’, ‘시체해부’, ‘외국여행자 진찰’, ‘검역차 검역기 계양’ 등 현 검역 여건상 실효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조항 삭제(안 제18조, 제28조, 제34조, 제40조)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차원에서 현행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격리수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법률에 규정(안 제27조)
- ‘하물’ 또는 ‘화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화물’로 통일(안 제1조, 제14조 등)

라. 검역소독대행업의 신고제 도입

- 검역조치 강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소독업무대행자 신고제 및 관리·지도 조항 신설
- 검역소독 대행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약제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검역소독대행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기술력 축적과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검역선 등의 운용근거 마련

- 검역소장은 검역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과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역감염병환자 발생 등 검역구역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검역감염병 관리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2. 하위법령 주요 위임 내용

- 하위법령 체계 정비
- 권한의 위임 문제

법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법 제5조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국제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 검역소독 대행업 등록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법 제23조(검역소독 대행업의 신고) 검역소독 대행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약제 및 인력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검역차량 및 검역선 운용 기준

법 제40조(검역선 등의 운용) ①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각종 서식 정비

3. 검역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 2005.12.21부터 2006.6.20까지 질병관리본부 주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로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연구 추진
- 2007.06.11. 보건복지부에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예정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2007년 10월 26일 연구 착수
- 검역법 개정(안)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여 현재 6회의 현장조사 및 3회의 실무진자문회의와 1회의 워크숍을 통하여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음
-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제3장 최종 연구개발 결과

제1절 전염병예방법

1.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주요 쟁점

가. 시행령 위임 사항

(1) 시행령 개정안 조문 차례

제1조 (목적)
제2조 (감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제3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지정)
제4조 (사업지원기구의 기능)
제5조 (시·도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제7조 (수당의 지급 등)
제8조 (간사)
제9조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역학조사의 시기)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제13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제15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16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17조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제18조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19조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제21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제22조 (방역관의 직명)
제23조 (방역관 등의 배치)
제24조 (방역관의 직무)
제25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제26조 (검역의 고시등)
제27조 (시·도의 보조비율)
제28조 (경비지출의 승인)
제29조 (손실보상)
제30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제31조 (보상수급권자)

제32조 (보상절차)

제33조 (피해조사반의 운영)

제3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제35조 (시행규칙)

(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 법 개정안 제9조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복지부 산하 기구이면서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산하기구인 사업지원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를 제시하여 위임해야 함.
-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가) 제 1 안 : 자문 기구

제**조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이라 한다)는 기구의 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구원성으로 하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감염병관리관련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국제공중보건관련 전문가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기구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의 자문
2. 보건소 감염병관리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3. 감염병관리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
4. 세계보건기구 및 인접 국가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한 공조를 위한 자문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제 2 안 : 국제협력 지원업무 지정기구 및 시·도 지원기구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유사 기구로 상정 : 주로 지원 업무 담당이며 시도지원단을 설정하였음
- 중앙 : WHO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로 설립
- 시도 : 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나 조직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시도 지원단으로서 실체와 장소가 있는 기구로 계상하고, 보건사회연구원 등 민간에 업무 지정토록 함

제**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이하 '사업지원기구'라 한다)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할 수 있다.

제**조(사업지원기구의 기능) ①사업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및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한 보고 및 조치 업무의 지원
2. 인접 국가들의 감염병 및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한 업무의 지원
3. 생물테러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 체계 정비를 위한 업무의 지원
4. 미국 질병관리본부 등 국제 유관 단체와의 지속적 교류를 위한 업무의 지원
5.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의 지원
6. 감염병관리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연구조사사업의 기획 및 평가
8. 감염병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 (시·도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시·도는 시·도의 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이하 "시·도 지원기구"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시도지원기구는 사업지원기구의 규정을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구성·운영한다.

- ◆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참조하였음

건강증진법

제5조의3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3) 감염병관리위원회

- 법 개정안 제10조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10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종전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 하나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시행령 제9조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령 제10조 예방접종피

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참조

- ◆ 감염병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조하였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위험 병원체

- 법 개정안 제20조에서는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15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보존 시설 및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수송 방법을 준수할 것

② 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가축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고위험병원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감염병질병의 병원체

(5) 역학 조사

○ 법 개정안 제17조에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역학조사팀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 역학조사의 시기

제11조 (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곳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특정지역에서 감염병의 발생, 감염병의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유행우려가 있거나, 유행시

나. 관할구역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유행우려가 있거나, 유행시

다. 관할구역안에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역학조사의 내용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장소
2. 감염병환자등의 성별·연령별 현황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감염병환자 등의 의료기관 진료 내역 조사

○ 역학조사반의 임무

제14조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라. 감염병 역학조사 연구 및 학술 활동

마. 감염병의 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바.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2. 시·도역학조사반

가. 지역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나. 지역내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지역내 역학조사결과의 보고

라.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마. 지역내 감염병의 발생·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분석 및 제공

바. 시·군·구보건소의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6)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법 개정안 제30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제16조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은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을 널리 공지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을 매년 검토·심의하여야 한다.

○ 미국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의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계획 참조

Section 202 Public Health Emergency Plan

(a) content. 위원회는, 구성된 지 6개월 이내에 공중보건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계획을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그 조항 또는 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이 법에 의해 공중보건 응급 상황 중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의 보고
- (2) 주, 지방, 연방 기관의 지원 등을 포함한 자원, 인력 및 서비스에 대한 중추적 관리의 수행
- (3) 의료 서비스,약품, 예방접종, 음식, 피난처, 주거의 공급 등 필수 자원의 위치선정, 조달, 보관, 이송, 유지관리 및 분배
- (4) 301조에 제시된 요건의 보고에 대한 순응
- (5) 이 법에 기술된 격리 및 검역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의 결정에 의하여 개인을 확인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사법 체계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수행
- (6) 응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들에게 주거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방법
- (7) 감염성 질환에 이환된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건강 관리 제공자의 선정 및 훈련
- (8) 이 법의 조항에 따른 예방접종
- (9)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건강 상태나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노출된 사람들의 치료
- (10) 이 법에서 정한 인간 배출물이나 감염성 쓰레기의 안전한 폐기에 대한 사항
- (11) 공중보건 응급상황 중에 치료, 검사,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검역을 받았거나 격리가 된 사람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제
- (12) 감염된 사람의 자료나 결과에 대한 추적
- (13)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주의 도시나 지역을 확인 한다-
 - (i) 이 법의 검역 또는 격리의 원칙 및 상황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격리되는 장소
 - (ii) 의학적 서비스의 공급, 음식 및 다른 필수 사항들을 사람들에게 분배할 장소
 - (iii) 공중보건 및 응급인력이 머무를 장소
 - (iv) 인력 및 물품이 이송되는 경로 및 방법
- (14) 관련된 문화적 상황, 가치, 종교적 원칙 및 전통
- (15)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방법들

(b) Distribution. 위원회는 그것의 적용에 책임이 있는 이들,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 대중에게 이 계획을 알려야 하고, 그들의 검토와 의견을 받아야 한다.

(c) Review. 위원회는 공중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매년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나. 시행규칙 위임 사항

(1)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차례

제1조	(목적)
제2조	(제4군감염병의 종류)
제3조	(감염병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제4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	(의사등의 감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발생신고)
제6조	(감염병 진단기준 등)
제7조	(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8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보고)
제9조	(표본감시감염병)
제10조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제12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제13조	(반입허가신청)
제14조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제15조	(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 및 이동)
제16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제17조	(예방접종의 날)
제18조	(예방접종의 공고)
제19조	(예방접종증명서)
제20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관)
제21조	(예방접종실시결과에 대한 보고)
제22조	(신고 등의 방법)
제23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4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제25조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제2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7조	(사립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28조	(공·사립의료기관 등의 감염병 예방시설 사용)
제29조	(감염병관리시설의 설비 기준 등)
제30조	(공무원의 증표)
제31조	(감염병환자의 입원치료 통지)-(신설)
제32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제33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
제34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소독조치)

- 제35조 (감염병환가등의 청소·소독 대상등)
- 제36조 (소독횟수등)
-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 제38조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제39조 (신고사항의 변경)
- 제40조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 제41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
- 제42조 (소독실시사항의 기록 및 보고등)
- 제43조 (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
- 제44조 (행정처분의 기준)
- 제45조 (검역위원의 임명과 직무)
- 제46조 (예방위원의 임명과 직무)
- 제47조 (감염병 요양비의 징수)
- 제48조 (보상의 신청등)
- 제49조 (과태료의 징수)

(2) 제4군 감염병의 종류

- 법 개정안 제2호 제5호에서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감염병 증후군, 재출현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으로서 긴급한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4군 감염병의 하나로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웨스트나일열을 추가하였음
-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참조

(3)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

- 법 개정안 제16조에서는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함
- 표본감시대상감염병과 전수대상 감염병의 지정에 있어서 현실감이 없는 것을 제외, 변경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함
- 변경이 필요한 감염병은 다음과 같은 것이 논의되었음.

제8조 (표본감시감염병)

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감시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군감염병 중 B형간염, (수두)
2. 제3군감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3. 지정감염병(c형 간염은 제외)

○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표본감시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기준
바이러스성 간염·선천성매독	-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
산모B형 간염	- 분만업무를 행하는 모든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 시·군·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 민간의료기관 : 소아과나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가 설치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정
성병	- 시·군·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 대학병원 - 비뇨기과, 산부인과, 피부과가 설치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지정
CJD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신경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
VRSA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의과대학 중 기생충학 교실

(4)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법 개정안 제35조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비·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함
- 현재까지 감염병관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유지되는 곳이 없었으나, 수도의료원 및 국립의료원에서 음압시설을 갖추고 격리병상 설비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임
- 감염병관리시설의 확대 및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러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지원하도록 기준을 제시함

제28조 감염병관리시설의 설비 기준 등

① 법 제35조에 의한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비와 관리를 위한 국가 격리(입원치료) 운영·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은 법32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시설이 제1항의 설비 기준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음압병실 시설 기준

- A. 음압병실은 전실, 화장실, 병실로 구분되어야 한다.
- B. 전실 : 전실에서 소독 후 옷을 갈아입으며 모든 물품을 제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C. 입력 : 음압시설은 0.25파스칼의 압력이 유지하도록 한다.
- D. 조명등 : 먼지방지 보호막이 설치되어야 한다.
- E. 천장과 벽 : 바이오 실리콘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바이오 실리콘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F. 배출구 : 병실 2개 이상, 전실 2개 이상, 화장실 1개 이상
- G. 흡입구 : 병실 2개 이상 (자외선 소독 후 배출시키는 필터를 설치한다)
- H. 기 타 : 복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일정 영역 이내를 차단시켜야 한다.

○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 Care Settings 2007 참조

Components of a Protective Environment
<p>III. Engineering</p> <p>Central or point-of-use HEPA (99.97% efficiency) filters capable of removing particles 0.3 μm in diameter for supply (incoming) a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ll-sealed ro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roper construction of windows, doors, and intake and exhaust ports o Ceilings: smooth, free of fissures, open joints, crevices o Walls sealed above and below the ceiling o If leakage detected, locate source and make necessary repairs <p>Ventilation to maintain ≥ 12 ACH</p> <p>Directed air flow: air supply and exhaust grills located so that clean, filtered air enters from one side of the room, flows across the patient's bed, exits on opposite side of the ro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itive room air pressure in relation to the corrid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ressure differential of >2.5 Pa [0.01" water gauge] <p>Monitor and document results of air flow patterns daily using visual methods (e.g., flutter strips, smoke tubes) or a hand held pressure gauge</p>

Self-closing door on all room exits

Maintain back-up ventilation equipment (e.g., portable units for fans or filters) for emergency provision of ventilation requirements for PE areas and take immediate steps to restore the fixed ventilation system

For patients who require both a PE and Airborne Infection Isolation, use an anteroom to ensure proper air balance relationships and provide independent exhaust of contaminated air to the outside or place a HEPA filter in the exhaust duct. If an anteroom is not available, place patient in an AIIR and use portable ventilation units, industrial-grade HEPA filters to enhance filtration of spores.

(5) 감염병환자의 입원통지

- 법 개정안 제39조에서는 감염병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입원사실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함
- 입원 치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제39조(감염병환자의 입원통지)

감역소장이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한다.

(6) 고위험병원체

- 법 개정안 제19조에서는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함
- 고위험병원체 이동 신고서 규정

제1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이동신고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본부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또는 이동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체의 관리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제12조 (반입허가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호의*서식의 고위험병원체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항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또는 주문서
2. 반입하고자 하는 고위험병원체 정보 및 사용계획서 1부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4. 취급 및 보관 등 안전관리방안에 관한 자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입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고, 허가의 경우 **별지 제*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증명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

○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제13조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① 법제21조제4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로 의심되는 병원체 또는 검체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받은 시군구 보건소장은 즉시 이를 수집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로 의심되는 병원체 또는 검체의 자체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최종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확인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를 즉시 검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즉시 검사하거나 확인하여 그 결과를 의뢰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 및 이동

제14조 (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 및 이동)

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기관은 분리신고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폐기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기관이 고위험병원체를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3월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보존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호의*서**

식에 의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매 6월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수송 방법을 준수하고 고위험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조건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제15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험실생물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한다.

(7) 예방접종의 날 지정

○ 법 규정 상 ‘예방접종의 날’ 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위임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예정접종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캠페인 등 홍보성 행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예방접종팀의 의견에 따라 규정

○ 법 개정안 제22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근거로 지정토록 함

○ 예방접종의 날의 지정

제16조 (예방접종의 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예방접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날’ 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고시 위임 사항

○ 제2조 정의 위임 사항

5. “제4군감염병” : 보건복지부령 위임
6. “지정감염병”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7.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8. “생물테러감염병”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9. “인수공통감염병”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0. “의료관련감염증”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1. “감염병환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

17. “고위험병원체” : 보건복지부령 위임

○ 법정 전염병

구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정군	
특성	발생즉시 환자격리 필요 (6종)	예방접종대상 (10종)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8종)	전염병관리대책 긴급수립 (19종)	유행여부조사·감시 (26종)	
질 환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 증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황열 · Deng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전염병증후군 [‡]	<환자감시대상>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 색 포 도 상 구 균 (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콥 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 콥병(vCJD)	<병원체감시대상>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ETEC)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EIEC)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EPEC) ·캠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 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에르시니아 엔테로콜리 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 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 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신고 주기	즉시	즉시	7일 이내	즉시	7일 이내	월 1회 [§]

(2008년 현재)

* 탄저 신고 시기 : 즉시 (제3군의 탄저의 경우 즉시 신고)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신고 시기 : 즉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 즉시 신고)

‡ 신종전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 단, 집단발생 인지 시 즉시 보고 및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해당 팀으로 양성검체 송부

○ 복지부장관 고시

구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증
질환	<신설>	가. 접촉격리대상 생물테러전염병 1) 탄저 2) 보툴리눔독소증 나. 호흡기격리대상 생물테러전염병 1) 페스트 2) 마버그열 3) 에볼라열 4) 라싸열 5) 두창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신설>

(1)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1안과 제2안의 내용 상의 차이는 없으나, 다만 제1안은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이고 제2안은 직접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고시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형식임

(가) 제 1 안

제**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필수 보고 대상 감염병

- 1) 두창
- 2) 폴리오
- 3) 신규 아형으로 인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
-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나. 임의 보고 대상 감염병

- 1) 콜레라
- 2) 폐렴성 페스트
- 3) 황열
- 4) 바이러스성 출혈열 (에볼라, 라싸열, 마버그열)
- 5) 웨스트나일열
- 6) 국가 또는 지역에서 특히 우려 대상이 되는 기타 질병
- 7) 원인 또는 출처 미상의 사건
- 8) 잠재적으로 국제공중보건 상 우려사항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

다. 임의 보고 대상 감염병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

- 2) 사건의 이례성
- 3) 국제적 확산의 위험성
- 4) 국제여행이나 교역 제한의 심각성

제**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제**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신고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

- 1) 사례 정의
- 2) 검사 결과
- 3) 위험의 출처와 유형
- 4) 환자 수와 사망자 수
- 5)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조건
- 6) 시행된 보건 조치

나. 대한민국 영토 내 사건 발생에 관련된 증거

다. 대한 민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위험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관련된 증거

(나) 제 2 안

제**조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감시 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항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은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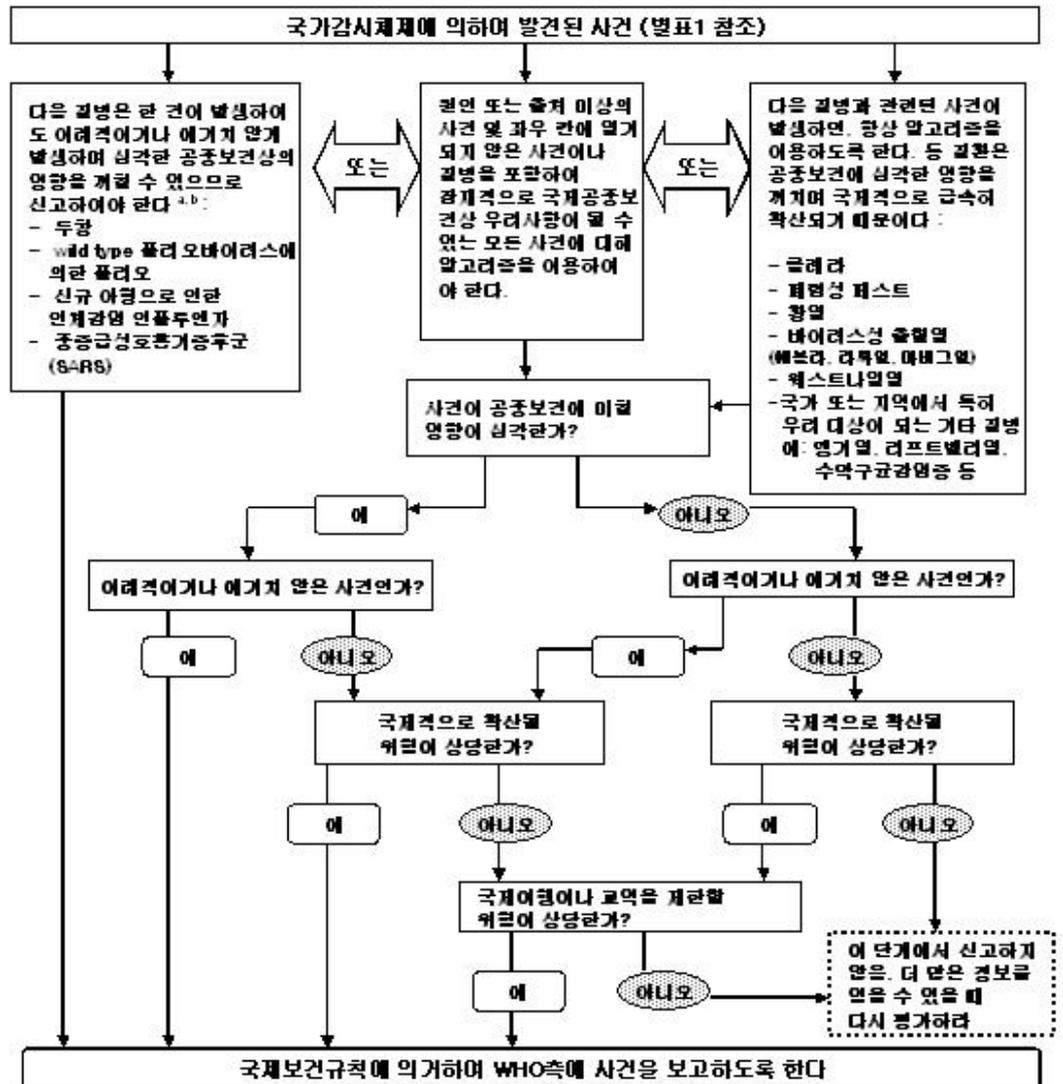
- 1. 두창
- 2. 폴리오
- 3. 신규 아형으로 인한 인체감염 인플루엔자
-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②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중 별표1의 도구에 따라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콜레라,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 라싸, 마버그), 웨스트나일열
- 2. 국가 또는 지역에서 특히 우려 대상이 되는 기타 감염병
- 3. 잠재적으로 국제공중보건상 우려사항이 될 수 있는 사건(원인 또는 출처 미상 사건 포함)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별표2의 내용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의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결정도구



별표 2. 세계보건기구 신고 사항

세계보건기구 신고 사항
1. 신고한 감염병에 대한 정보 환례 정의 검사 결과 위험의 출처와 유형 환자 수와 사망자 수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조건 시행된 보건 조치
2. 대한민국 영토 내 사건 발생에 관련된 증거
3. 대한 민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위험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관련된 증거

(2) 입원치료 감염병환자의 범위

- 법 개정안 제37조 제1항에서는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아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 자문회의 시 감염학회 측에서는 감염병의 경우 반드시 입원이 필요없이 자가 격리를 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원치료’ 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격리’ 에서 ‘입원치료’ 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환자의 인권 신장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입원치료(격리)’ 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기본적으로 격리(입원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시하되,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공중보건학적 이익을 위하여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특히 결핵을 입원치료 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제기 소지가 있으므로 인권단체와의 논의가 추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제**조(입원치료 대상 감염병) ①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치료 대상인 감염병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 가. 제1군 감염병
- 나. 에볼라
- 다. 마버그출혈열
- 라. 라싸열
- 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바. 조류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 사. 두창
- 아. 디프테리아
- 자. 홍역
- 차. 천연두
- 카. XDRTB/MDRTB

② 제1항의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공중보건학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 치료할 수 있다.

제2절 검역법 하위법령

1.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검역법 하위법령 주요 쟁점

가. 시행령 위임 사항

(1) 시행령 개정안 조문 차례

제1조 (목적)

제2조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3조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권한의 위임)

제5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2)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의 위임

- 오염지역으로 유입되는 감염병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검역법 제45조 (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에 관하여 두가지 의견이 대립하였음.
 - ✓ 제1안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 제2안 검역소장에게 위임
: 검역소장의 판단 하에 즉각적인 대처 가능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할 경우,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검역소 간의 오염지역이 상이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황 별 즉각적인 대처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 위임함

령 제4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3)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 법 개정안 제5조는 오염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
- 현재 검역업무는 각 국가별로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오염지역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오염지역 운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특히 가장 왕래가 많은 중국의 경우, 콜레라 등 세균성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중국 전체가 오염지역으로 구분되어 중국에서 입항하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형편이어서 비효율적인 검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오염지역, 비오염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오염지역 지정 기준

령 제2조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오염지역을 정한다.
1.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의하여 오염지역이라고 정한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연1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역학주보에 등재된 지역
 3. 검역감염병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풍토적 여건 등을 가진 지역
 4. 질병관리본부장이 특정지역의 검역감염병 발생에 따라 검역강화대상으로 분류한 지역
 5. 기타 미국 CDC의 질별중보, Promedmail 등 외국의 감염병정보망에 등재된 감염병발생지역

- 오염지역 해제 기준

령 제2조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지정된 오염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오염지역 중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신설)
 2. 세계보건기구 역학주보에 등재된 후 ○○개월 후 발생하지 아니한 지역(신설)
 3. 질병관리본부장이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특정지역의 검역감염병 발생의 우려가 해소되어 검역해제대상으로 분류한 지역(신설)

(4)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 기존의 검역신고서를 건강상태질문서로 용어 변경

○ 육로 검역의 실시로 인한 운송수단 외에 육로로 걸어서 출입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개인검역신고서 제시 규정

령 제3조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관으로부터 서류의 제출 및 제시를 요구 받은 운송수단의 장과 그 승객 또는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운송수단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나.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와 건강상태질문서

다. 도보로 입국하고자하는 자의 개인검역신고서

○ 검역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의 경우 검역소장의 재량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는 지침 상 생략할 수 있으나 향후 신고 징구 여부 및 방법을 검역소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령 제3조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시행규칙 위임 사항

(1)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 차례

제1조 (목적)

제2조 (검역감염병의사환자)

제3조 (검역조사의 생략 등)

제4조 (검역통보 등)

제5조 (검역장소 등)

제6조 (운송수단별 신고서 등)

- 제7조 (위생검사)
- 제8조 (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 제9조 (전자검역을 하는 검역소 및 그 부호)
- 제10조 (전자검역의 신청)
- 제11조 (전자검역의 심사 및 통보)
- 제12조 (전자검역 후의 조치)
- 제13조 (검역전산망에 의한 통보 등)
- 제14조 (소독의 명령)
- 제15조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제16조 (검역조치에 따른 및 통보)
- 제17조 (오염운송수단등의 감시)
- 제18조 (오염운송수단등의 감시 해제 기준)
- 제19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제20조 (검역소독대행업의 신고)
- 제21조 (검역소독대행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제22조 (검역소독의 방법 및 기준)
- 제23조 (검역소독의 절차)
- 제24조 (검역소독실시대장)
- 제25조 (검역소독대행업자 교육)
- 제26조 (행정처분 기준)
- 제27조 (검역증등)
- 제28조 (임시검역증의 교부조건)
- 제29조 (회항지시 등)
- 제30조 (사체반입에 필요한 서류)
- 제31조 (운행 중 발생한 사체에 대한 검역조사)
- 제32조 (검역조치에 관한 증명서등 신청)
- 제33조 (감염병매개체구제증명서 등)
- 제34조 (검역감염병에 관한 예방접종등)
- 제35조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 제36조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 제37조 (증명인등)
- 제38조 (검역차량의 형태·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
- 제39조 (검역선 등의 배정)
- 제40조 (검역공무원증)
- 제41조 (검역조치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제42조 (과태료 징수절차)

(2) 검역감염병의사환자

- 법 제2조 제4호는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시행규칙 상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규칙 제2조 (검역감염병의사환자)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추정되는 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일 이상 체온이 38°C 이상인 경우
2. 발진, 황달 또는 선 증창이 동반되는 경우
3. 업무 또는 정상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설사를 동반한 경우
4. 기타 멀미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유발된 질병이외의 오한 등 비정상적 건강상태를 동반한 경우

(3) 검역조사의 생략

- 법 개정안 제6조 3항은 일정한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위임함
-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과 상관없이 다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규칙 제3조 (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라 함은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항행 또는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5. 기상 등의 사유로 회항하는 경우

(4) 검역 전의 승선·탑승

- 원칙적으로 검역 전의 승선·탑승은 금지되어 있으나, 법 제13조 단서에 의하여 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

- 개정 전의 규정 내용처럼 도선사 등 특정 직역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익의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운송수단의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규정
- 기타 접안검역의 경우 도선사가 필요하다면, 도선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여 허가증을 받는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규칙 제8조(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① 검역소장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우, 검역 전의 승선·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

1. 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긴급한 위기·위난으로 말미암아 구조가 필요한 경우

② 검역소장은 1항의 검역 전의 승선 및 탑승을 허가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발급 한다.

(5) 건강상태질문서의 간소화

-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하여 검역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서식 정비 및 중복되는 서식 요구 절차의 간소화 문제가 시급한 실정임
- 특히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강상태질문서의 근본적인 효용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육로 검역의 경우, 39만명이나 되는 인원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중복되는 서식 요구 절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바, 당일 입·출경자의 경우 건강상태질문서의 징구를 생략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정 경우 서식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규칙 제6조 (운송수단별 신고서 등)

- ① 검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운송수단별 신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박 : 별지 제**호서식의 선박보건상태신고서
 - 2. 항공기 : 별지 제**호서식의 항공기보건상태신고서
 - 3. 열차 및 자동차 : 별지 제**호서식의 열차·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
- ② 영 제**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는 별지 제**호서식, 건강상태질문서는 별지 제**호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건강상태질문서의 경우 원활한 검역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이 승무원 및 승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식 변경 및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③ 영 제**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보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호의 서식에 의한다.
- ④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대리점은 영 제**조제1호 각목의 서류의 제출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건강상태질문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 법 제16조 제2호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검역소장인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요청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법 제33조의 감염병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규칙 제6조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검역소장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검역소장으로부터 임시격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법 제33조의 감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

- 법 개정안 제20조는 검역조사 결과 해당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에 감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부령으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역감염병 외에 전파위험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부여

규칙 제19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해당운송수단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및 소독 이외에 법 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왕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는 것
2. 건강진단이나 시체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는 것
3.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4. 쥐·벌레나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5.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공중보건 상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기타 수단이 없는 경우, 격리 등 검역조치에 준하는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8) 검역소독 대행업 신고를 위한 시설, 장비, 약제 및 인력 기준

- 검역소독대행업체에 대해서 등록 신고 받고자 하는 이유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
- 등록 신고를 통해 관리하여 가스소독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음
- 별표 ** 검역소독대행업자의 자격기준

검역소독대행업자의 자격기준

○ 감염병예방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인 원

-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 : 1인 이상
- 나. 소독작업원 : 작업에 필요한 인원

2. 시 설

(1) 규모

- (가) 약품창고 : 15㎡ 이상
- (나) 장비 및 기자재창고 : 30㎡ 이상
- (다) 청산(HCN)가스 보관용창고 : 10㎡ 이상

(2) 조건

- (가) 창고는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천정 및 바닥은 판목,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라) 약취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마) 약품창고와 장비 및 기자재창고 및 청산가스보관창고는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 (바) 약품창고는 반드시 자물쇠 장치가 있어야 하고,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장 비

- 가. 방독면 5개 이상
- 나. 개관기 2개 이상
- 다. 가스 측정기 1개 이상
- 라. 공기호흡기 1개 이상
- 마. 운반 차량 1대 이상 (적재량 400kg 이상 : 승용차 제외)
- 바. 해상운반선 1척 이상
- 사. 가스방지소독의 5번 이상
- 아. 휴대용 연무소독기 2대 이상

○ 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3이 요구하는 소독업 기준

<u>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의3관련)</u>
1. 인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2.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3. 장 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 마. 삭제
- 바.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사.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아.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9)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가) 벌레잡이 소독 기준

- 현행 검역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소독 또는 쥐, 벌레잡이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별표2에서 소독방법을 ① 가스소독과 ② 기타소독 및 소독 방법의 2가지로 규정함
- 쥐잡이 소독의 경우 가스소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없으나, 벌레잡이 소독의 경우 현재 분무 소독과 가스소독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벌레잡이 소독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 ✓ 제1안 벌레잡이 소독의 경우 가스소독만을 허용해야 한다.
 - ✓ 제2안 벌레잡이 소독의 경우 검역소장의 재량으로 가스소독 외에 다른 소독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소독방법의 선택은 명령권자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다만, 행정처분의 일관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량행위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검역법시행규칙 별표 2.

<소 독 기 준>

1. 가스소독기준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소독대상
하이드로겐시안나이트(HCN)	2g/㎡ 이상	2시간이상	쥐, 벌레
메틸브로마이드(MB)	48g/㎡ 이상	24시간이상	벌레
셀파렐브로마이드(SO ₂ F ₂)	48g/㎡ 이상	24시간이상	벌레

※ 검역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화물 소독의 경우는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의한다.

※ 벌레잡이 소독의 경우에는 벌레가 다량서식하는 등 살충(분무)소독으로는 그 소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가스소독을 지양한다.

2. 기타 소독기준

제1호의 가스소독을 제외한 살충·살균소독방법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며, 사용약품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허가를 득한 살충·살균제를 사용하고 약제별 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소독 기준 및 방법

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곤충·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
(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6 관련)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하여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할 경우 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여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침구·용구·도서·서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소독 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

가. 물리·환경적 방법

- (1) 서식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트랩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하여야 한다.
-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법

- (1) 모기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포식하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 또는 뚜껑을 덮어 먹이제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에 쥐의 은신처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서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살서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나) 항공기 소독 기준

○ 현재 소독기준은 선박에 치우쳐 있는바, 운송수단 별 소독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항공기의 경우 소독을 잘못하게 되면 비행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도 있어 소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공사별로 따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에서 항공기에 대한 소독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소독명령을 내리고 관리해야 할 것임

○ 항공기 집중 공략 사항은 사스나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일 것임. 따라서 사스나 조류 독감 관련된 소독 위주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호흡기 감염 관련 소독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항공기 소독 기준 마련을 위하여 현재 대한항공 측에 자료 요청 중임

(다) 육로 운송 수단에 대한 소독 기준

○ 육로 검역의 경우, 추후 열차 및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육로 운송수단에 대한 소독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별표 **. 검역소독 방법 및 기준

검역 소독의 방법 및 기준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을 하는 사람의 안전 및 소독 시행 주변 지역의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소 각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독 가능한 방법이 없는 등 소각하여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3. 소 독	
가. 운송수단	운송수단의 모든 부분은 페놀성 살균 세제로 세척함으로써 살균될 수 있다.
나. 화물 또는 그의 일부	(a) 페놀성 살균 세제를 사용한 세척 (b) 압력 증기 소독 (c) 포름알데히드 증발
다. 오염된 물과 물 용기	오염된 물과 물 용기는 염소 용액으로 살균될 수 있다.
라. 사람의 수하물 및 의류 또는 침구를 포함한 개인물품	(a) 페놀성 살균 세제를 사용한 세척 (b) 압력 증기 소독 단, 세척 또는 증기로 인해 물품이 손상될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증발로 살균될 수 있다.
마. 조리도구 및 식기	(a) 끓는 물 소독

(b) 요소 용액에 담그는 소독

(c) 압력 증기 소독

바. 오염된 폐기물

오염된 폐기물은 운송수단으로부터 내려지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살균되어야 한다.

사. 약물 소독

약물 소독의 경우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해충

가. 운송수단 및 화물

(a) 살충(분무) 소독

해충이 서식하는 운송수단 또는 그 부분, 또는 그 내부 상품 또는 화물은 스프레이 또는 분말로 살균되어야 한다.

(b) 가스 소독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하이드로겐시안나이트(HCN)	2g/ m ³ 이상	2시간이상
메틸브로마이드(MB)	48g/ m ³ 이상	24시간이상
셀파렐브로마이드(SO ₂ F ₂)	48g/ m ³ 이상	24시간이상

나. 운송수단의 위생 상황, 벌레가 다량 서식 여부 등 그 외 사정을 감안하여 충분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5. 쥐

쥐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된 운송수단은 검역관의 감독 아래 구서되어야 한다.

가. 가스 소독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하이드로겐 시안나이트(HCN)	2g/ m ³ 이상	2시간이상

(10) 검역차량 및 검역선 운용 기준

○ 법 개정안 제40조에 규정됨 ‘검역선 등의 운용’ 규정은 행정상 필요한 관용차량이 아닌, 응급차

량으로 활용하고자 응급차량 운용의 근거로 만들어진 규정임

- 사스가 발생할 경우, 119 차량은 1종 전염병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관내 보건소 응급차량 동원해야 하나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응급차량을 검역차량으로 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건을 대비하여 예산이 지나지게 낭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임. 효용을 감안해서 운용해야 할 것임
- 인천공항의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검역차량 운용 조항을 마련한 것이나 응급차량 배정 문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임. 일단은 근거를 만들어 둔 것에 의의를 두고, 하위법령에는 개괄적으로만 내용을 제시함
- 검역선의 경우, 과거 검역선이 있었으나 세관 통폐합과정에서 세관에서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검역선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검역선에 관한 내용은 부처 간의 문제도 있으므로, 개괄적인 내용만을 다루기로 합의함

규칙 제38조 (검역차량의 형태·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역차량은 환자 후송 등 긴급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구급자동차의 형태·내부장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39조 (검역선 등의 배정)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의 운행범위·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검역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선 또는 검역차량의 수량을 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 기타

(1) 검역장소

- 해항 검역의 경우만 검역장소가 규정되어 있고, 항공 검역의 경우 막연히 공항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항의 경우도 검역장소 위치를 위도로 위치 지정하여 시행규칙 별표 1에 반영하였음
-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1. 참고

(2) 검역소독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

-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참고

(3) 서식 정비

① 각종 서식 정비 및 중복되는 서식 요구 절차의 간소화 문제

- 현재 서식의 경우 국립 00 검역소라고 하여 지역을 명시하게 되어 있음. 지역 지칭하지 않고 어느 곳이나 전체 사용할 수 있게 국립 검역소로 변경
- 운송수단 및 화물 감시 통보서 신설
- 검역소독대행업 신고서 신설
- 검역소독대행업 신고증 신설
- 검역소독대행업 신고사항변경 신고서
- 검역소독대행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 화물소독실시대장

② 사체 반입 시 필요한 문서 간소화

- 법 개정안 제33조 제1항은 국내로 사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규정함
- 검역감염병의 경우에만 방부처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규칙 제30조 (사체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1. 제출 서류

가. 사망진단서

나. 방부처리증명서

(검역감염병의 경우)

다. 그 밖에 검역관이 사체반입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제시서류

가. 항해일지 ·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제4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속히 동 규칙 이행에 필요한 전염병예방법과 검역법 및 그 하위법령 등의 국내법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완성된 법률 체계를 확립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SARS 및 AI 등의 발생과 같은 전세계적인 비상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의 개편 및 확립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2005)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보건규칙(2005)의 개정 의도와 적절히 부합하는 한편,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맞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
- 수차례의 실무자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개정된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이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 시행령 위임사항

(1)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내용 신설

- ◆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립을 규정하고 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법에 따라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중앙 : WHO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로 설립
 - 시도 : 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나 조직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시도 지원단으로서 실체와 장소가 있는 기구로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

- ◆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제10조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의 하나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3) 고위험 병원체의 반입허가에 관한 사항

- ◆ 법 개정안 제20조에서는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한 요건을 강화함

(4) 역학 조사의 시기 및 내용

- ◆ 역학조사팀의 의견을 반영하여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함

(5)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음

-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개월 이내에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규정

○ 시행규칙 위임 사항

(1) 제4군 감염병의 종류

- ◆ 제4군 감염병의 하나로 국제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웨스트나일열을 추가하였음

(2)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

- ◆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제2군 감염병 중 수두를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고, 지정감염병 중 C형 간염을 제외시키는 안을 도출함

(3)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 감염병관리시설의 확대 및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음압시설을 갖추고 격리병상 설비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도록 이러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지원하도록 기준을 제시함

(4) 감염병환자의 입원통지에 관한 서식

- 감염병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입원사실 통보하도록 법 개정안에 따라 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5)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관한 사항

- ◆ 고위험병원체 이동 신고서 규정 및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6) 예방접종 활성화를 위한 예방접종의 날 지정에 관련한 사항을 제시함

○ 고시 위임 사항

(1)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의 종류 및 감시내용에 관한 사항

- ◆ IHR(2005)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의 종류 및 감시 내용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2) 입원치료 감염병환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

- ◆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 에볼라, 마버그출혈열, 라싸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두창, 디프테리아, 홍역, 천연두, XDRTB/MDRTB 등임
- ◆ 다만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공중보건학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검역법 하위법령

○ 시행령 위임 사항

(1)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

- ◆ 오염지역으로 유입되는 감염병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검역법 제45조 (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위임함

(2)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 ◆ 각 국가별로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는, 오염지역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오염지역 운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오염지역을 일관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제시

(3)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운행수단별로 정리하였음

- ◆ 각 운행수단별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검역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 보건의상태신고서의 경우 검역소장의 재량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규칙 위임 사항

(1) 검역감염병의사환자의 기준 제시

- ◆ 2일 이상 체온이 38°C 이상인 경우, 발진, 황달 또는 선 종창이 동반되는 경우, 업무 또는 정상적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설사를 동반한 경우, 기타 멀미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유발된 질병 이외의 오한 등 비정상적 건강상태를 동반한 경우 등 의사환자의 기준을 제시함

(2) 검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제시

- ◆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과 상관없이 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기상 등의 사유로 회항하는 경우,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역 전의 승선·탑승에 관한 내용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

- ◆ 검역 전의 승선·탑승할 수 있는 경우를 공익의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운송수단의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규정

(4) 건강상태질문서의 간소화 가능성 제시

- ◆ 국제교역의 증가로 인하여 검역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서식 정비 및 중복되는 서식 요구 절차의 간소화 문제가 시급한 실정에 따라 특히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건강상태질문서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제시

(5)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검역소장이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고, 요청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법 제33조의 감염병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6)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 내용에 관한 사항

- ◆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왕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는 것, 건강진단이나 시체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쥐·벌레나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7) 검역소독 대행업 신고를 위한 시설, 장비, 약제 및 인력 기준 신설

- ◆ 등록 신고를 통해 관리하여 가스소독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음

(8) 검역 소독 방법 및 기준 정리

-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벌레잡이소독기준에 관한 사항 및 선박 위주의 소독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 검역법 체계 개편을 위하여 항공 소독 및 육로 운송 수단에 관한 소독 내용 규율하고자 함

(9) 검역차량 및 검역선 운용 기준에 관한 내용 규정함

- ◆ 새로이 규정된 검역차량 및 검역선 운용 기준에 관하여, 검역차량의 경우, 응급차량 운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역차량 및 검역선 운용 기준에 대해 개괄적으로 규정함

○ 기타 사항으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해항검역장소 외에 기타 검역장소 위치 규정하고, 검역소독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하는 한편, 각종 서식을 정비하였음

○ 향후 효과적인 전염병 예방 및 조직적·체계적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전염병 관리 및 검역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개정안이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시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음

제7장 참고 문헌

- _____,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자료집.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4.
- _____, 보건국제법과 WHO.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의자료집. 2005.
- _____,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따른 전염병관리 및 검역체계 개편방향 보고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6.
- _____,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조기 통제 및 피해 최소화 전략의 법적·윤리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6.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5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2005.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5년 전염병관리사업지침. 2005.
- 국립보건원. 사스(SARS) 관리지침. 2003.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지침. 2004.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업무 안내. 2005.
-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Power, Duty, Restrai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Lawrence O. Gostin. Public Health Law and Eth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http://www.fnih.org/>
- <http://www.nih.go.jp/niid/index-e.html>
- <http://www3.niaid.nih.gov/>
- <http://www.hpa.org.uk/>
- <http://www.nih.gov/>
- <http://www.cdcfoundation.org/>